

##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제안연월일 : 2015. 11. .

제안자 : 산업통상자원위원장

###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3년 7월 3일 이원욱의원이 대표발의한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32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2013. 12. 10)에, 2014년 11월 11일 박명재의원이 대표발의한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년 12월 12일 이상민의원이 대표발의한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년 12월 19일 정수성의원이 대표발의한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3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2015. 4. 10)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7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5. 11. 19)에서 심사한 결과 4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다.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2015. 11. 23)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경우 자동으로 변리사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최근 정보기술의 발달과 산업의 다양화에 따라 변리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변호사가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이수하도록 하고, 변리사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특허청 공무원이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받을 경우 자격취득에 제한을 두도록 하며, 특허법인 설립의 최소구성원 요건을 완화하고 각종 규제에 대하여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규제 개선 및 변리사 제도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 및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이수하여야 변리사의 자격을 부여함(안 제3조).
- 나.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은 변리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사람은 2년이 지난 후 변리사가 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5호).
- 다. 특허법인의 설립요건 중 최소구성원수를 현재 5명에서 3명으로 완화함(안 제6조의3제1항).
- 라. 2017년 1월 1일부터 3년마다 규제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함(안 제29조 신설).

##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리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하는 사람”을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변리사 등록을 한 사람”을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제4조제5호가목 중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해임된 사람”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제4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의3제1항 중 “5명”을 “3명”으로 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규제의 재검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부터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변리사의 결격사유
2. 제5조의2에 따른 변리사 등록의 거부
3. 제5조의3에 따른 변리사 등록의 취소
4. 제6조의2에 따른 변리사 사무소의 설치
5.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변리사회의 설립 및 회칙의 인가
6. 제13조에 따른 변리사회에 대한 감독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리사 자격취득 및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변리사시험에 합격하였거나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는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5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결격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u>해당하는 사람은 변리사의 자격이 있다.</u></p> <p>1. (생략)</p> <p>2.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u>자격을 가지고 변리사 등록을 한 사람</u></p>	<p>제3조(자격) -----<u>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u>-----.</p> <p>1. (현행과 같음)</p> <p>2. ----- <u>자격을 가진 사람</u></p>
<p>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변리사가 되지 못한다.</p> <p>1. ~ 4. (생략)</p> <p>5.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p style="padding-left: 20px;">가.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u>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u></p> <p style="padding-left: 20px;"><u>&lt;신 설&gt;</u></p> <p style="padding-left: 20px;"><u>나. (생략)</u></p>	<p>제4조(결격사유) -----</p> <p>-----.</p> <p>1. ~ 4. (현행과 같음)</p> <p>5. -----</p> <p style="padding-left: 20px;">가. ----- <u>해임된 사람</u></p> <p style="padding-left: 20px;"><u>나.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u></p> <p style="padding-left: 20px;"><u>다. (현행 나목과 같음)</u></p>

다. (생략)

제5조(등록)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등록신청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쳐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호에 따른 변호사, 제4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제5조의3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재등록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략)

제5조의2(등록 거부) ① 특허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변리사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2. 제5조제2항에 따른 실무수습을 받아야 할 사람이 실무수습을 받지 아니하였을 때

② ~ ③ (생략)

제6조의3(특허법인의 설립) ① 변리사는 업무를 조직적·전문적으

라. (현행 다목과 같음)

제5조(등록) ① (현행과 같음)

<삭제>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의2(등록 거부) ① -----  
-----  
----- 제4조 -  
-----.

<삭제>

<삭제>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의3(특허법인의 설립) ① --  
-----

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명 이상의 변리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특허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신설>

-----  
----- 3명 -----  
-----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9조(규제의 재검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부터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변리사의 결격 사유
2. 제5조의2에 따른 변리사 등록의 거부
3. 제5조의3에 따른 변리사 등록의 취소
4. 제6조의2에 따른 변리사 사무소의 설치
5.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변리사회의 설립 및 회칙의 인가
6. 제13조에 따른 변리사회에 대한 감독